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00. 00. (제 회)	

공공기록물관리법령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이 국회의결('21.12.9.)됨에 따라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시행령 조문을 개정하고 입법 미비사항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전자기록물 속성 및 행정업무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책 전환

- 1) 전자기록물에 이관 개념 확대에 대한 적용대상 규정(안 제32조, 제35조)
 - 법 제19조제4항 신설에 따라, 기록물의 관리권한 이전만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후속 절차도 일부 보완하고자 함
 - 전자기록물의 저장 공간을 공유하면서 관리권한만 이전한 경우는,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내 이관한 전자기록물을 삭제하지 않도록 제외
- 2)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 정책 유연화(안 제2조, 제36조, 제46조, 제50조)
 - 최근 다양해진 전자기록물 유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용어를 신설·변경하고 기록관이 보존기간 10년 이상 전자기록물에 대한

보존포맷변환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

3) 기록물 보존기간 변경 협의대상에서 대통령기록물 제외(안 제26조 제1항)

- 대통령기록물과 수사·재판 등 관련 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의장과 별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었으나, 대통령기록관이 중앙 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과 분리됨
-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리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대통령 기록관에서 수행하도록 변경되어 공공기록물법에서 해당 업무 내용 삭제

나. 기록물의 부기·정정의 대상 추가 및 절차 마련(안 제62조의2)

- 1) 법 제30조3의 신설에 따라, 기록물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기록물 부기·정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마련
 - 2)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부기·정정 요청의 절차와 요청서 서식을 마련하고, 부기·정정의 수행주체, 처리방법, 이력관리 등을 규정
- 공공기관이 기록물관리기관에 정정 요청을 하면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 반출 등 협조하고, 요청한 공공기관에 부기·정정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

다. 기록물관리 교육·훈련 대상 확대(안 제79조)

- 1) 법 제42조 개정애 따라 교육훈련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교육 훈련 내용을 규정

- 2)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교육훈련에 필요한 자료 및 강의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2. 24. ~ 2022. 2. 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“장기보존패키지”란 전자기록물, 보존포맷, 기록관리 메타데이터

및 진본확인 정보 등을 함께 묶은 것을 말한다.

제26조제1항 단서 조항 중 “「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, 수사·재판·정보·보안”을 “수사·재판·정보·보안”으로 한다.

제3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⑥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각호의 전자기록물은 관리권한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다.

1.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이 저장 공간을 공유하는 전자기록물

2. 제2조제11호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

⑦ 제6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이관해야 한다.

제35조제6항 본문 중 “해당 전자기록물”을 “제32조제6항제1호의 전자기록물을 제외하고 해당 기록물”로 한다.

제36조제1항 본문 중 “전자기록물에 대해서는 제35조제5항에 따른 인수 완료 결과를 통보한 후 1년 이내에”를 “전자기록물을 필요한 경우,”로, “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”를 “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②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, 영 제30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10년 이상 보존하게 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하여 관리해야 한다.

제46조제2항 후단의 “관리정보”를 “보존포맷으로 변환하고 기록관리”로, “주기적으로 장기보존포맷을 변환하여야”를 “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하여 관리해야”로 한다.

제50조제3항 후단 중 “장기보존포맷”을 “장기보존패키지”로 한다.

제5장제7절에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2조의2(기록물의 부기·정정) ① 법 제30조의3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「형사소송법」 제440조에 따른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관보나 신문에 공시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.

② 공공기관의 장이 소관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와 법적 근거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해당 기록물을 보유 중인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삭제 2. ~ 12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2. ~ 12. (현행과 같음) 13. “장기보존패키지”란 <u>전자기록물, 보존포맷,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및 진본확인 정보 등을 함께 묶은 것을 말한다.</u>
제26조(보존기간) 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, 준영구, 30년, 10년, 5년, 3년, 1년으로 구분하며,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「 <u>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, 수사·재판·정보·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②·③ (생략)	제26조(보존기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수사·재판·정보·보안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32조(기록물의 이관) ① ~ ⑤ (생략)	제32조(기록물의 이관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부 칙

③ 제2항의 요청서를 받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의 소관 공공기관에게 직접 부기 또는 정정을 처리하도록 해야 하며, 그 처리과정에 참관하여 올바른 부기·정정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.

④ 기록물을 부기 또는 정정하는 때에는 변경 전의 내용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, 부기·정정의 사유와 일자 및 처리한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는 등 그 처리내용을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.

제79조의 제목 “(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)”을 “(기록물관리 교육·훈련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”를 “교육·훈련을 실시해야 하며, 기록물관리 교육·훈련에 필요한 자료, 강의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전문교육훈련”을 “교육·훈련”으로, “시행하여야”를 “시행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종사자”를 “교육 대상자”로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설>	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각호의 전자기록물은 관리권한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다. 1.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이 저장 공간을 공유하는 전자기록물 2. 제2조제11호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	제36조(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) ①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중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전자기록물에 대해서는 제35조제5항에 따른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한 후 1년 이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	제36조(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) ①----- ----- ----- 전자기록물을 필요한 경우, ----- ----- 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.
<신 설> 제35조(처리과 기록물 인수) ① ~ ⑤ (생략) ⑥ 제5항에 따라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처리과의 장은 해당 전자기록물을 삭제해야 하며, 삭제한 기록물을 복구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처리과는 해당 전자기록물을 업무상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에 삭제 또는 파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. ⑦ (생략)	⑦제6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이관해야 한다. 제35조(처리과 기록물 인수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제32조제6항제1호의 전자기록물을 제외하고 해당 기록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⑦ (현행과 같음)	②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등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. 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전자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정보 메타데이터를 추가한 장기보존포맷으로 재변환하여야 한다.	②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, 영 제30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10년 이상 보존하게 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하여 관리해야 한다. <삭 제>

④ ~ ⑦ (생략)

제46조(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) ① (생략)

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전자기록물의 진본성·무결성·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정보 메타데이터와 행정전자서명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, 주기적으로 장기보존포맷을 변환하여야 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50조(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상태검사) ①·② (생략)

③제2항에 따른 상태검사를 통하여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오류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조치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, 장기보존포맷으로 채수룩한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등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<신설>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46조(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-- 보존포맷으로 변환하고 기록관리 -----

-----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 하여 관리해야 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50조(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상태검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

-----.

장기보존패키지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62조의2(기록물의 부기·정정)

①법 제30조의3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「형사소송법」 제440조에 따른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관보나 신문에 공시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.

②공공기관의 장이 소관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와 법적근거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해당 기록물을 보유 중인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제2항의 요청서를 받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의 소관 공공기관에게 직접 부기 또는 정정을 처리하도록 해야 하며, 그 처리과정에 참관하여 올바른 부기·정정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.

④기록물을 부기 또는 정정하는 때에는 변경 전의 내용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, 부기·정정의 사유와 일자 및 처리한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는

	등 그 처리내용을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.
제79조(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) ①법 제9조제2 항제6호 및 법 제42조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 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기록물 관리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야 한다.	제79조(기록물관리 교육·훈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 교육·훈련을 실시해야 하 며, 기록물관리 교육·훈련에 필 요한 자료, 강의인력 등을 지원 할 수 있다.
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관 리 전문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 한 교육훈련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.	②----- ----- -- 교육·훈련----- ----- 시행해야 ----.
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록물관리 종사자 의 소속 기관장과 협의하여 국 내외 기록관리 교육기관에 교육 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.	③----- ----- 교육 대 상자----- ----- 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정책기획과	
연 락 처	(042) 481 - 6226